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2001. 7. pp.53~67

© 한국노동연구원

# 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 보장기금 부담금체계 개선방안 : 합리적인 부담금 경감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수리적 고찰

김 호 경\*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보험(신탁) 등에 가입하여 사회적립할 경우 이 부분만큼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기업도산시 해당금의 지급채무가 소멸될 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해당금에 대한 경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기준과 합리적인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함으로써 임채보장기금 요율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퇴직보험 등에 의한 적립비율이 0~100% 사이인 영역에서 퇴직보험 등에 의한 적립액이 해당금에 미치는 영향도는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비율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근속연령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영향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부담금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산출식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임금채권보장기금, 해당금 경감, 부담금 경감, 퇴직보험

## I. 서론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kkim@kli.re.kr)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후적으로 사업주에게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임금채불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체당금의 형태로 미리 지불하는 제도이다.<sup>1)</sup> 이는 기업의 적자 도산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8년 2월 20일에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8년 7년 1일부터는 보증기금 방식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도입·운영되어 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금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sup>2)</sup> 현행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 보장의 차원에서 사회보장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금에 대해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두고 있다. 즉 최대 체당금은 임금의 경우에는 각 1월분, 퇴직금의 경우에는 각 1년분이 퇴직 당시의 근로자의 연령기준으로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연령별 상한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체당금의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표 1> 퇴직시 연령별 체당금 상한액

퇴직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상한액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 II.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요율)부담금

### 1. 부담금의 징수범위 및 요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이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때 부담금 징수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text{사업자 부담금(P)} = \text{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총액(W)} \times \text{부담금비율(\pi)}$$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부담금비율’은 노동부 장관이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연도별 부담금비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연도별 부담금비율

구 분	1998	1999	2000
부담금비율	2/1000	0.3/1000	0.9/1000

## 2. 부담금 경감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보험(신탁)에 가입하여 사외적립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3)</sup>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에 대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감기준과 경감률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기준과 경감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에 의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요율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부담금 경감기준은 개별 사업주의 퇴직금 사외적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의한 체당금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요율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한 요율체계에 대한 연구의 범위내에서 경기 불안정시 기업도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경감률 산출에 앞서 먼저 퇴직보험 및 체당금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 Ⅲ. 퇴직보험(신탁) 및 체당금 현황

#### 1. 퇴직보험(신탁) 현황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보험 등’은 보험회사에 의한 퇴직보험과 은행 및 증권회사에 의한 퇴직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시고용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1999년 4월부터 퇴직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은행의 경우 2000년 3월부터, 증권회사의 경우 2000년 10월부터 각각 퇴직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퇴직보험 상품과 퇴직신탁 상품 간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상품의 비교

	퇴직보험	퇴직신탁
가입대상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로자	(좌동)
가입한도	목표금액 적립	(좌동)
수령(인출) 시기	퇴직, 중간정산, 해지, 계약 이전시	(좌동)
연금식 수령	가능	불가
원리금 보전	원리금보전	- 은행 : 원리금보전형 실적배당 - 투신 : 실적배당
취급기관	생명·손해보험회사	은행/투신사/증권사
세제혜택	- 이자소득비과세 - 퇴직금 수령시 과세(퇴직소득) - 사업체에 전액손비인정	(좌동)

주: 1) 증권사는 2000년 10월부터 상품을 판매함.

2) 퇴직보험은 1999년 4월, 퇴직신탁은 2000년 3월부터 판매함.

퇴직보험 등에 대한 가입 현황을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의 2.8% 그리고 가입대상 근로자의 17.1%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이 퇴직보험 등에 가입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퇴직보험 등의 가입비율

(단위: 개, 명, %)

	단체수	근로자수
적용대상	488,095	9,128,873
퇴직보험등의 가입	13,457	1,556,876
가입비율	2.8	17.1

주: 1) 적용대상은 2000년 8월말 기준임.

2) 보험회사는 2000년 3월말, 은행은 2000년 9월말 기준임.

## 2. 체당금 현황

경험적으로 볼 때, 그동안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모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1998년 7월 1일 사업시행 이후 2000년 7월 31일까지 약 2년간 지급된 총 체당금(1,007억 8,200만원) 중에서 임금에 대한 지급액이 50.01%(504억 600만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액이 49.99%(503억 7,600만원)로서 약 절반 정도를 각각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급여종류별 체당금 지급실적

(단위: 명, 천원)

	근로자수	계(A)	임금		퇴직금	
			금액(B)	B/A×100	금액(C)	C/A×100
1998	4,639	16,121,571	7,785,992	48.30%	8,335,579	51.70%
1999	12,588	38,813,900	19,319,974	49.80%	19,493,926	50.20%
2000	14,254	45,847,000	23,300,000	50.82%	22,547,000	49.18%
전체	31,481	100,782,471	50,405,966	50.01%	50,376,505	49.99%

부담금의 경감은 퇴직보험 등의 가입에 따른 것이므로 퇴직금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퇴직보험 등에 의한 퇴직충당금 적립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을 경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임금에 대한 채당금은 퇴직보험 등을 통해 퇴직충당금을 적립하더라도 이에 대한 채당금의 지급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퇴직보험 등의 가입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과는 무관하다.

## IV.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경감률 산정 방안

### 1. 경감률 산정 개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 부분만큼은 기업도산시 채당금의 지급채무가 소멸될 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채당금에 대한 경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 적립비율이 0%인 경우에는 경감률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보험 등에 의한 퇴직충당금의 적립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채당금지급 감소효과는 100%로 나타난다. 하지만, 적립비율이 0%에서 100% 사이인 영역에서는 퇴직보험 등에 의한 적립액이 채당금에 미치는 영향도는 이러한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비율뿐만 아니라 각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채당금의 경감수준은 퇴직보험 등의 적립비율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개별 근로자의 근속연령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sup>4)</sup>

단,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퇴직보험 등의 가입에 따른 부담금 완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당금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 채무도 면제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산정시 이를 감안하여 부담금을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비율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속연령이 채당금 경감률 및 이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간단한 수리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수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률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식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보험계리적인 측면에서 부담금에 대한 경감률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경감률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감소 금액과 퇴직보험 등의 가입에 따른 체당금의 감소 금액이 같게 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감률 산출식 도출

앞에서도 시사한 바와 같이 동일한 퇴직보험 적립비율하에서도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기업의 도산시 발생할 수 있는 체당금에 대한 경감효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현행 최대 체당금의 지급한도인 근로자의 근속연령(3년)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예 1〉 근무연수가 3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 $N \leq 3$ )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최대 체당금은 3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3년 이하일 때 이는 최대 체불퇴직금이 최대 체당금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보험 등의 적립비율이 체당금 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100%이므로(다시 말해서 적립비율만큼 체당금이 경감되므로) 퇴직보험 등의 적립비율만큼 부담금을 경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예 2〉 근무연수가 4년 이상(3년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 ( $N \geq 4$ )

한편,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도산 발생시 최대 체불퇴직금이 최대 체당금(3년치 퇴직금)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보험 등에 의한 퇴직금 적립비율과 체당금 지급액 간의 관계를 감안하여 부담금 경감률을 근로자의 근속연령에 따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사업장 내의 특정 근속연령을 가진 개별 근로자의 퇴직총당금과 이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액 경감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즉 특정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N$ , 연간퇴직금을  $S$ 라 하며, 이 근로자가 속해 있는 기업(사업장)의 퇴직보험 등에 의한 퇴직금 적립률이  $\psi\%$ 인 경우 동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퇴직총당금( $R$ )은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단,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의 증가는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퇴직금( $S$ )은 매년  $1S$ 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R = \frac{\Psi}{100} NS \dots\dots\dots (1)$$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사업장)의 적자 도산시 이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동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당금지금액(A)은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 NS \left(1 - \frac{\Psi}{100}\right) \dots\dots\dots (2)$$

여기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최대 해당금 지급한도는 3년치 퇴직금(3S)이므로 동 기업(사업장)의 도산시 퇴직보험 등의 존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해당금의 경감액(X) 및 경감률(x)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begin{aligned} X &= 3S - A; \\ &= S \left[3 - N \left(1 - \frac{\Psi}{100}\right)\right] \dots\dots\dots (3) \end{aligned}$$

$$\begin{aligned} x &= \frac{X}{3S} \\ &= 1 - \frac{N}{3} \left(1 - \frac{\Psi}{100}\right) \dots\dots\dots \end{aligned}$$

(4)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에 대한 경감률에 관해서는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적인 수치로 볼 때 해당금의 약 절반(49.9%) 정도가 퇴직금 지급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퇴직보험 등에 의한 퇴직충당금 적립시 전체 해당금의 약 50%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 해당금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며 다른 위험률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현 상황에서는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약 0.5x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도출한 사업자 부담금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P = W \times \pi \times 0.5x = .5\pi W \left[ 1 - \frac{N}{3} \left( 1 - \frac{\psi}{100} \right)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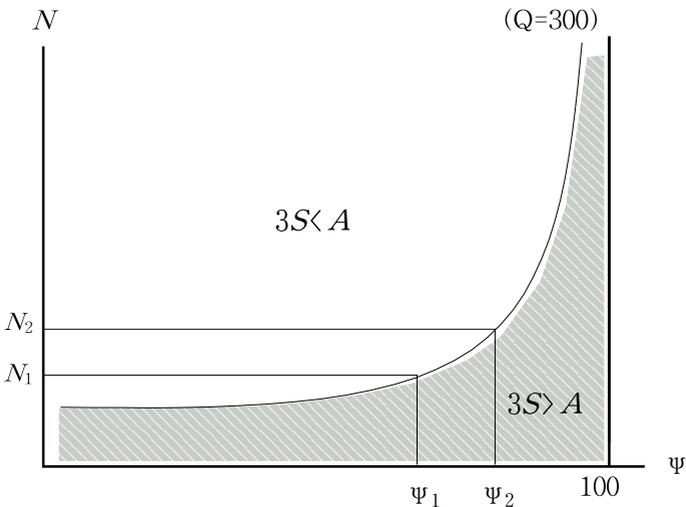
여기서,  $P$ 는 사업자부담금,  $W$ 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총액,  $\pi$ 는 부담금비율,  $x$ 는 식 (4)에 의해 산출된 경감률을 각각 나타낸다.

### V. 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 연구의 관심대상은 채당금 경감액이 양(+)의 수치( $X > 0$ )를 가지는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이를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로부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즉 이는 앞 장에서 수립한 1근로자 모형의 식 (3)으로부터 다음 식 (5)의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N < \frac{300}{100 - \psi} \dots\dots\dots (5)$$

[그림 1]



[그림 1]에서 가로축( $\psi$ )은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비율을, 세로축( $N$ )은 근로자의 근속연령을 각각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1]에서의 곡선의 형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최대 경감액 수준(3년치 체당금)하에서 근속연수( $N$ )와 퇴직보험 등에 의한 적립률( $\psi$ )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  $X > 0$ 의 조건(양의 경감률)을 만족시켜 주는 부분은 곡선 아래의 검게 나타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곡선의 윗부분은 도산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체당금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최대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이 때에는 물론 퇴직보험 등에 의한 퇴직금 적립수준이 너무 낮아 체당금에 대한 경감효과는 전혀 없다. 한편, 곡선상의 모든 점은 최대 체당금지급한도인 3년치 퇴직금( $3S$ )이 도산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체당금지급액( $A$ )과 같게 되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N$ 과  $\psi$ 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Q=300$ 이란 최대 체당금의 지급한도( $Q$ )인 3년치 체당금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로축상의 100은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률이 100%가 되는 지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위의 1근로자 모형에서 근속연수가  $n_1$ 인 경우  $\psi_1$ 만큼의 퇴직보험 적립률을 유지할 경우 체당금 경감효과는 100% 발생한다. 퇴직보험 적립률을 이보다 더 높이어도 체당금의 (추가적인) 감소를 가져오지 못하며 따라서 부담금의 인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기업은 이보다 적립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경제적인 유인이 없을 것이다.

반면, 근속연수가  $n_2$ 로 상승하는 경우, 이 기업은 퇴직보험에 대한 적립률을 높임으로써 체당금 경감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담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률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즉 근속연수( $N$ )가 높거나 퇴직보험 등에 의한 퇴직금 적립률이 낮을수록 식 (2)에 의한 지급체당금( $A$ ) 수준이 높아져 곡선 윗부분인  $3S < A$ 의 영역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은 반면, 근속연수( $N$ )가 낮거나 퇴직보험 등에 의한 적립률이 높을수록 곡선 아랫부분인  $3S > A$ 의 영역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 (5)의 관계식을 통해서 다음의 <의제 1>를 도출해 낼 수 있다.

## 〈의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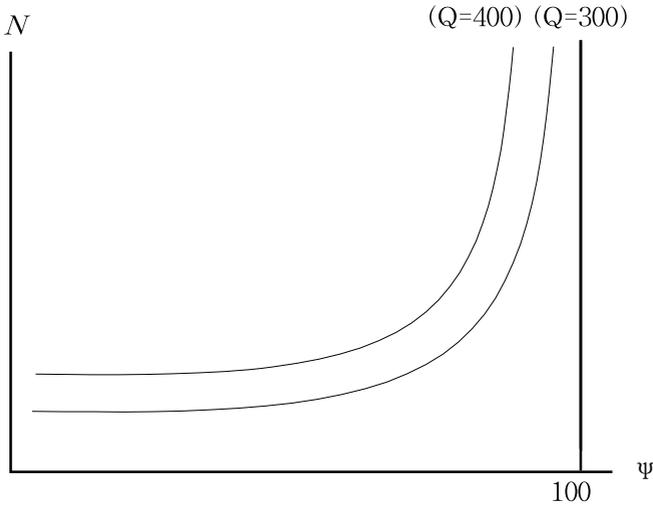
- i) 주어진 최대 경감액 수준하에서 근로자의 근속연령이 낮을수록 퇴직보험 적립률( $\psi$ )의 증가가 체당금 경감액에 미치는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 ii) 반면, 근로자의 근속연령이 높을수록 퇴직보험 적립비율( $\psi$ )의 증가가 체당금 경감액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다.

이는 최대 체당금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경우, 낮은 퇴직금 적립률 수준하에서는 퇴직보험 등의 적립수준 변동보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의 변동이 체당금 경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높은 퇴직금 적립률 수준하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변동보다 퇴직보험 등의 적립 수준의 변동이 체당금 경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이는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률( $\psi$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체당금 경감액은 근속연수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서 근속연수의 차이에 따라 체당금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률( $\psi$ )이 높은 경우에는 체당금 경감의 정도가 근속연수의 차이에 대해 다소 둔감해지며 따라서, 근속연수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체당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률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경우 개별 기업(사업장)의 근로자 근속연령 구조의 차이에 따라 체당금 경감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한편, 최대 체당금의 한도액을 증가시킴에 따라 식 (5)에 의해 곡선이 좌상향 이동하게 되며 [그림 2]에서는 현행 최대 체당금 한도액을 4년치 퇴직금(4S)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의 곡선의 변동( $Q=400$ )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다음의 의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의제 2〉

- i) 최대 체당금 한도( $Q$ )를 증대시킬 경우  $P(X>0)$ 가 증가하므로 동일한 적립비율 및 근속연령 등의 조건하에서도 체당금에 대한 경감 수준은 더욱 증대한다.

즉 이는 최대 체당금 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체당금의 경감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결국 사업주의 부담금에 대한 경감률 수준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비율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퇴직충당금 적립의 증대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합리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VI. 경감률 산출 사례

여기서는 제IV장 제2절에서 도출한 식 (4)에 따라 가상적인 한 기업의 퇴직보험 등의 적립비율 및 근로자의 근속연령 구조에 관한 가상치를 가지고 기업 전체의 체당금 경감률에 대한 산출 예를 보이기로 한다.

<표 6> 근무연수별 경감률 및 근속구성비

근무연수	1	2	3	4	5	6	7	8	9	15	25	30+	계
근무연수별 체당금 경감률(%)	60.0	60.0	60.0	46.7	33.3	20.0	6.7	0	0	0	0	0	
구성비(%)	10.0	20.0	20.0	15.0	10.0	10.0	5.0	2.0	2.0	4.0	1.0	1.0	100%
경감률× 구성비	0.06	0.12	0.09	0.07	0.033	0.02	0.003	0	0	0	0	0	0.396

주 : 1) 구성비의 합계는 100%임.

2) 여기서, 근무연수 15는 10~19세, 25는 20~29세, 30+는 30세 이상을 각각 대표함.

즉 어떤 사업장의 퇴직보험 등의 적립비율이 70%,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년부터 30년 이상으로 다양하며, 근속연령별로 근로자수의 구성비가 다음 표와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각 근속연수에 대한 체당금 경감률( $\chi$ )을 식 (4)에 따라 계산해 보면 <표 6>의 둘째 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근속연령별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감률을 얻을 수 있다.

이 표에서 구성비란 해당 기업(사업장)의 근로자수의 구성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사업장) 내의 근로자 수가 근속연수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업(사업장)의 근로자의 근속연령 구성비에 따른 전체 체당금 경감률은 근무연수별 체당금 경감률의 근속연령 구성비에 대한 가중평균으로서 산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업(사업장) 전체의 체당금 경감률은 39.6%(=0.06+0.12+...+0.003=0.396)임을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Ⅶ. 결 론

본고에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산출 및 경감률 체계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고를 통해 제시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체계는 퇴직보험에 대한 적립비율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은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보험 등에 대한 적립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낮은 근로자가 누리는 상대적인 혜택이 더 높을 것이므로 근속연령 구조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퇴직보험 등의 적립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체계는 이러한 유인 일치적 (incentive compatible)인 요율체계를 갖게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요율체계 선진화 및 합리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보험 등에 대한 가입비율을 더욱 높이게 함으로써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경기 위축시의 기업도산 증가의 가능성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Endnotes

- 1) 채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의 9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부담금 경감 및 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부담금의 경감)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 : ①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부담금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4) 실제로 개별 근로자의 채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외에도 근로자의 연령 및 근로자의 실제 퇴직금 미수금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채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임금채권보장기금법.

임금채권보장기금법 시행령.

Black, K., Jr. and Skipper, H., Jr. *Life Insurance*(11th ed.). Prentice- Hall, Inc. 1987.

Bowers, N. L., Jr., et al. *Actuarial Mathematics*. Society of Actuaries, 1986.

Edward Yemin and Arturo S. Bronstein. ed.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in the Event of the Employer’s Insolvency.” *Labour-Management Relations Series 76*,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1.

Trowbridge, C. L. *Funding of Group Life Insurance*. Transactions of SOA, IV 1952.